

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4누11415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
원고, 항소인 1. A
2. B
3. 주식회사 C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○○
피고, 피항소인 ○○구청장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. 2. 8. 선고 2023구합67546 판결
변 론 종 결 2025. 4. 25.
판 결 선 고 2025. 6. 13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2. 4. 6. 원고 A, B에게 한 취득세 49,880,400원, 지



방교육세 4,988,040원, 농어촌특별세 2,494,02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 피고가 2022. 4. 6. 원고 주식회사 C에게 한 취득세 50,105,080원, 지방교육세 5,010,500원, 농어촌특별세 2,505,2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"G호"를 『H호』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각주를 삭제하고, 아래에서 제6행의 "매매계약"을 『공급계약』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11면 제6행의 "인정하기 어렵다"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원고들은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더라도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하자로 정상적으로 입주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, 원고들의 하자 보수 요청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종국적으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하게 되었으므로,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가 정한 '부득이한 사유'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승인(2019. 5.경) 후 그 상태를 확인하고 2019. 9. 27. 잔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



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,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하자가 존재함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단 취득하였다는 것인 점,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의 관련 해제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주장하였고, 관련 민사사건 판결 역시 E의 귀책사유로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해제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였던 점, 이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관련 해제조항에 따라 해제된 것을 두고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』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심○○

판사 이○○

판사 이○○